

##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적용시한이 만료(1991. 12. 31)됨에 따른 시한연장임
- 목적 : 새마을사업지원

4. 주요골자

- 새마을사업을 위한 취득과 등기·등록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면제
  - 농어촌 주택개발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
  - 취약지 대책 사업에 따른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
  - 도로변 불량주택 정돈사업
  - 소도읍 가꾸기사업등

5. 검토의견

-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
  - 농어촌주택개발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취득
  - 취약지 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 집단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대체취득

- 분산농지 집단화에 따른 토지의 대체취득
-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로면 불량주택 정돈사업 및 수해상습  
지마을대책 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대체취득
-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도읍가구기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  
또는 토지의 대체취득시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시행  
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개정하는 것  
으로 지속적인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하여는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  
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